

채용시 친인척 등 공사재직 인원 공개

(‘26.07.31, 인사처)

□ 친인척 재직 채용인원수

채용구분	채용인원	친인척 재직인원	비고
개방형직위	-	-	‘26.2분기채용
별정직	-	-	
체육직	-	-	
연구직	-	-	
채용형인턴	-	-	
업무직 (무기계약직)	-	-	
비정규직 (계약기간1년이상)	58	2	

※ 입사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라 조사

□ 조사대상(채용시점)

1. 채용된 인원의 재직 배우자

2. 채용된 인원의 재직 4촌이내 혈족과 인척

○ 4촌이내의 혈족

- 본인과 친자·형제·자매·숙질 등에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상호 간에
사실상 자연 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 중에서 촌수가 4촌 이내인 경우
ex) 부, 모, 형제, 자매 조부모, 외조부모, 외삼촌, 이모, 삼촌, 고모 등

○ 4촌이내의 인척

- 혈족의 배우자 : 상기 ‘4촌 이내의 혈족’관계 있는 사람의 배우자
ex) 형제자매의 배우자, 외숙모, 이모부, 숙모, 고모부, 외사촌형제의 배우자, 사촌형제의 배우자 등
- 배우자의 혈족 : 배우자를 기준으로 상기 ‘4촌이내의 혈족’에 해당하는자
ex) 배우자의 ‘부, 모, 형제, 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, 외삼촌, 이모, 삼촌, 고모 등’
-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: 배우자를 중심으로 ‘4촌 이내의 혈족’
관계 있는 사람의 배우자
ex) 배우자의 ‘형제자매의 배우자, 외숙모, 이모부, 숙모, 고모부, 외사촌형제의 배우자, 사촌형제의 배우자 등’

* 조사 및 공개 기준 :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(‘19년, 기획재정부)